



FOCUS



송한복

현)엘지전자특허그룹장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사
 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전 한국지적재산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무역구제제도를 중심으로)

I. 지식재산권의 국제조약 및 규범

1.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식재산권은 무단복제나 모방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또는 그 단속의 문제는 통상문제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무역기구(WTO: World Trade Office)협정은 지식재산권 보호기준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둘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 물품의 수입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각국정부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돼 왔었다. WIPO나 UNESCO는 지식재산권보호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조약을 감독해 왔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1) 정건, WTO/TRIPS 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관세법적 대응,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문요약

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이 분야에 대한 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²⁾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 특별 요건을 수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의 보류나 압수, 몰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WTO 부속 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n Counterfeit Goods : TRIPs)은 처음에는 위조 상품의 무역 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무역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다.

원래 WTO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WIPO의 관할 아래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 인접권에 관한 로마협약 등 국제 협정이 있었을 뿐이다.³⁾ WTO 체제가 정착 되면서 일방적 무역 보복이 금지 되고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2. WTO TRIPs 협정

WTO TRIPs 협정은 상표권자 및 저작권자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입면허 보류를 청구하는 서면을 행정 또는 사법 관할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TRIPs 제 51조)

WTO TRIPs 협정이 이와 같이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에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국경의 수출입 단계에서 통관보류에 관한 구체적 요건, 절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⁴⁾

본 규정의 특징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입에 관해서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의 통관보류에 관한 절차 절차를 채택해야 할 의무가 회원국들에게 부가

되어 있는 반면에 상표권, 저작권 이외의 기타의 지식재산권 (예컨대 특허권이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등)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통관보류에 관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회원국들에게 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⁵⁾

주목해야 할 점은 WTO TRIPs 협정이 회원국으로 하여금 세관의 직권 단속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세관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회원국 세관이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WTO TRIPs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이다.⁶⁾

이 경우에 통관보류를 신청하는 지식재산권자는 관할 기관에 대하여 수입국법상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TRIPs 제52조)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신청과 증거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WTO TRIPs 협정은 세관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에 관한 절차를 채택한 회원국의 경우에 권리자로부터의 정보요구 및 수출입자의 이의신청 및 통관보류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TRIPs 58조)

WTO TRIPs협정은 수출입자와 세관 등을 보호하고 통관보류 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기관이 통관보류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기탁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공탁금의 요구가 세관절차의 원용에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TRIPs 53조 제1항)

최근의 국제 동향은 고관세, 까다로운 인정절차 등을 금지하는 사전적 보호 무역 정책보다도 WTO가 인정하는 반

2) 정교진,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4면

3) 정교진, 앞의 논문, 18면

4) 정건, 앞의 논문, 46면

5) 정건, 앞의 논문, 46면

6) 정건, 앞의 논문, 4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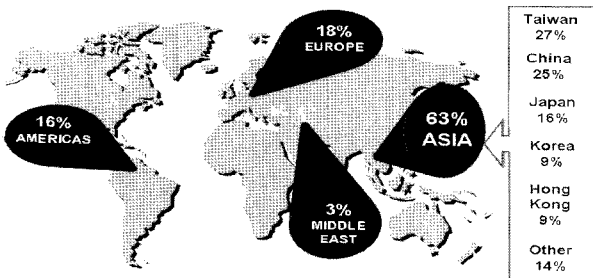
덤핑 등 사후적 무역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행정적 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⁷⁾

3.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구제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 ITC의 Section 337 조사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1990~2000년도에는 년 평균 12건 수준의 조사를 하였으나 이후 5년(2001~2005) 동안은 년 평균 23건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10월 현재 39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⁸⁾ 그림1에서는 대륙별 조사 현황에서 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만 및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ITC의 국가별 Section 337 조사건수〉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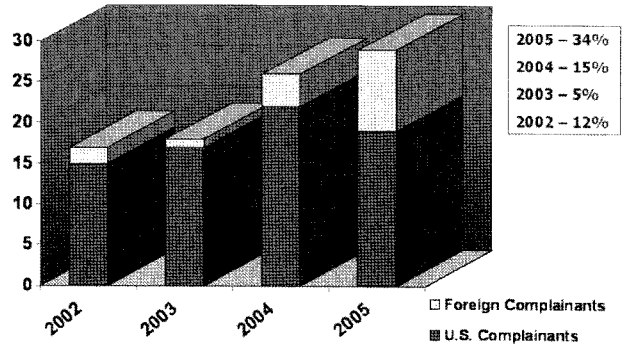


최근에 외국 기업의 ITC 제소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는 Section 337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 구제요건 중 미국 내 산업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공장과 설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 상당한 노동력 또는 자본투입,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또는 라이선싱(licensing)을 비롯한 위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 내 산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19 U.S.C 1337 (a) (3))

이의 영향으로 그림2와 같이 미국 내에서 외국인의 ITC 제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34%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Hynix 반도체가 미국에 ITC 제소한바 있으며 국내 기업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그림 2. 미국 ITC의 최근 Section 337 조사 건수와 외국인 제소 비중〉¹⁰⁾



(2) 일본의 동향

일본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함께 최다 수입금지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¹¹⁾

그림 3은 일본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증가추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일본세관의 홈페이지의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상황/을 방문하면 주기적으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7) 한국 무역위원회, 최근 통상 환경 및 무역 구제제도, (2005.11)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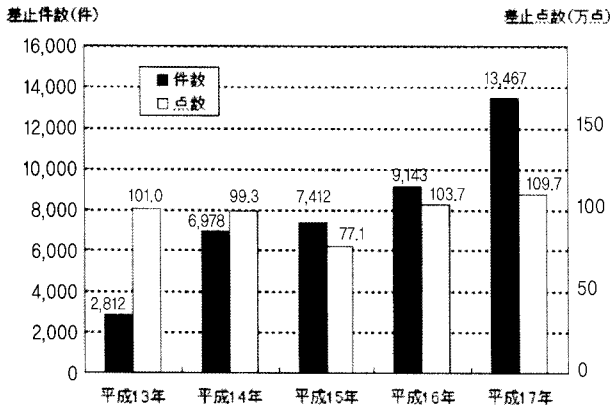
8) Sidley Austin LLP Seminar Materials, The U.S ITC, (2006) 7면

9) Sidley, 앞의 자료, 9면

10) Sidley, 앞의 자료, 9면

11) 일본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 지적재산 침해물품, 본문

(그림 3. 일본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실적)¹²⁾



(표 1. 일본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지식재산별 금지 실적)¹³⁾

	平成13年	構成比	平成14年	構成比	平成15年	構成比	平成16年	構成比	平成17年	対前年比	構成比
特許権	1	0.0%	7	0.1%	1	0.0%	80	0.9%	66	82.5%	0.5%
実用新案権	5,000	0.5%	39,200	3.9%	550	0.1%	107,500	10.4%	46,906	43.6%	4.3%
意匠権	0	0.0%	0	0.0%	1	0.0%	1	0.0%	2	2.0%	0.0%
商標権	2,727	28.6%	6,859	69.2%	7,332	98.7%	8,922	97.4%	13,228	149.3%	97.9%
著作権	239,879	23.8%	611,100	60.5%	591,061	76.6%	590,749	66.6%	816,845	118.3%	74.4%
著作権特権	76	2.7%	108	1.5%	80	1.1%	119	1.3%	174	146.2%	1.3%
著作権特権	690,654	68.4%	318,751	31.5%	136,094	17.6%	174,594	18.9%	120,991	69.3%	11.0%
著作権特権	0	0.0%	0	0.0%	0	0.0%	0	0.0%	1	全増	0.0%
育成者権	0	0.0%	0	0.0%	0	0.0%	0	0.0%	60	全増	0.0%
育成者権	-	-	-	-	0	0.0%	1	0.0%	0	0.0%	0.0%
育成者権	-	-	-	-	0	0.0%	660	0.1%	0	0.0%	0.0%
合計	2,812	100.0%	6,978	100.0%	7,412	100.0%	9,143	100.0%	13,467	147.3%	100.0%
	1,009,958	100.0%	992,908	100.0%	771,306	100.0%	1,036,997	100.0%	1,097,400	105.8%	100.0%

표 1은 일본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지식재산별 금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4년 개정된 관세정률법이 시행된 이후 특허권으로 인한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금지 신청제도란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할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화물의 수입을 금지, 인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부정경쟁금지 청구권자도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61조4)

(3) 한국의 동향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은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포함하여 덤핑방지 관세제도 등 분야별 무역구제신청건수가 표2에 나타나 있으며 한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표 2. 한국 무역위원회의 무역 구제제도 운영 현황)¹⁴⁾

	87-99	00	01	02	03	04	05	합계
- 반덤핑	84	17	6	18	15	5	7	152
- 상계관세	-	-	-	-	-	-	-	-
- 세이프가드	31	0	1	1	-	-	-	33
- 불공정무역행위	210	9	13	9	5	5	7	258
- 산업경쟁력조사	-	-	-	4	5	7	8	24
- 합계	325	26	20	32	25	17	22	467
				(28)	(20)	(10)	(14)	(443)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더욱 많아지고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 다국적 기업의 확대 등 생산 및 기업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무역구제의 다변화로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피해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무역구제 전문기관인 한국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이용은 미국 일본에 비교할 때 아주 적으며 특히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용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미국 및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2) 일본세관 홈페이지, 앞의 자료, 平成17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상황

13) 일본세관 홈페이지, 앞의 자료,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상황 첨부자료

14) 한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무역구제동향, (2006), 12면

〈표 3. 한국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 추이〉¹⁵⁾

유형 \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1	계
지재권 침해	3	50	25	14	8	1	2	1	1	2	-	-	3	3	2	4	5	4	7	3	138
원산지 위반	1	10	9	5	10	-	-	-	4	2	-	1	3	3	6	4	-	1	-	-	59
수출입 질서 저해	-	5	27	1	5	3	-	-	-	-	2	8	4	3	5	1	-	-	-	1	65
계	4	65	61	20	23	4	2	1	5	4	2	9	10	9	13	9	5	5	7	4	261

II.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ITC 구제

1. 미국 ITC

(1) ITC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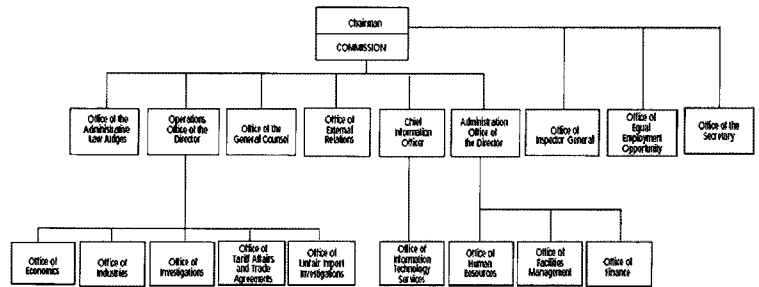
미국 관세법 제1337조¹⁶⁾(이하 “Section 337”)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US ITC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게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준 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ITC가 Section 337위반이라고 판정하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 또는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압류조치를 행한다.¹⁷⁾ 동법은 원래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뿐 아니라 카르텔의 형성, 독점금지법의 위반행위, 단체불매,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광고, 특정덤핑위반, 타인의 상업포장 또는 영업비밀의 도용과 책임의 전가 등의 부당행위가 포함된다.¹⁸⁾

ITC는 Section 337 조사를 수행한 후 대통령에게 결정내

용을 통지하고 대통령은 ITC의 결정 통지 수령 후 60일내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결정을 추인하는 경우 ITC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동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이 취급되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¹⁹⁾

(2) ITC 조직

〈그림〉 ITC 조직도²⁰⁾



ITC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양당에서 동일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다른 당 출신의 위원이 교대로

15) 한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무역통계자료, (2006.11월), 3면

16) US Code : Title 19 Sec. 1337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17)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미국편 (2005), 259면

18) 윤충원, 안영태,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주요규정과 쟁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산업경제연구소논문집 30집, (1999.12월), 54면

19)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59면

20) ITC 홈페이지(<http://www.usitc.gov>), 조직도

임명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부당하게 ITC의 운영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ITC조직 중 중요한 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 심판관(ALJ : Administrative Law Judge)

행정심판관(ALJ)은 ITC 조직도의 행정심판 사무소 (Office of the Administrative Law Judge)에 소속되어 있으며 4명의 ALJ(Judge-Luckern, Harris, Barton, Bullock)가 주재한다. ITC는 조사가 개시되면 ALJ를 지명하고 ALJ는 조사 절차를 주관하며 ITC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비판정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²¹⁾

나. 불공정 수입조사 사무국

(OUUI :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OUUI는 조사 개시 전에는 조사 신청서가 조사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이를 ITC에 자문하고 신청자가 조사신청서의 형식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국장의 9인의 조사관(Investigative Attorney)이 있으며 Section 337의 모든 조사를 수행한다. 공익을 대표하여 독립적인 당사자로 활동하므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고 쟁점의 제기도 가능하다.²²⁾

다. 자문기관(General Counsel)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역할도 겸하고 있다.

(3) Section 337의 구제요건

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무에 따라 다른 구제요건

Section 337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또한 동조항의 제목(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로 나누어 규정하여 별도의 조사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9 U.S.C 1337 (a)(1) (A)-(E))

즉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물품의 소유권자, 수입자, 또는 수탁자 (consignee)²³⁾가 동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 내에서 그러한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1)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2) 미국 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3) 미국 내 산업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4) 미국 내에서 무역과 상업을 억제시키거나 독점하는 위협이나 효과(threat of effect)를 주는 경우에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U.S.C. 1337 (a) (1) (A))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불법적인 행위는 1998년 개정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등

본 조항은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의 소유권자, 수입자 또는 수탁자가 이를 미국 내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한 경우에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 U.S.C. 1337 (a) (1) (B)-(E)) 여기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범위는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

다. 지식재산권의 범위

여기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범위는 (1)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 (2) 유효하

21) 1 ITC, 홈페이지(<http://www.usitc.gov>), 조직도 설명

22) USITC, Section 337 investigation 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USITC publication 3516, June 2002, p.2, Bernd Martenczuk, supra note 40, p121

23) 다만, 이하에서 소유자, 수입자, 수탁자란 용어는 소유자, 수입자, 수탁자의 대리인(agent)도 포함한다. (19 U.S.C. 1337 (a) (4))

고 시행 가능한 U.S.C. Title 17에 의거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3)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미국의 특허권이 요구되는 공정 (process)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생산되거나, 가공되거나 또는 채광된 물품 (4)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1946년 상표권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미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5) U.S.C. Title 17의 Chapter 13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에 한정된다. 다만 위 (3)의 공정 특허 (Process Patent)에 대해서는 인정여부에 관하여 과거에 많은 논란²⁴⁾이 있었으나 1998년 개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에서 나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국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 등록된 보통법상의 상표(non-registered, common law trademark)의 보통법상의 구제조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은 제조자가 불공정경쟁방법 및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 또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²⁵⁾ 또한 TRIPS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침해물품의 수입 또한 Section 377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다만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 미국내 침해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존재

위와 같이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설립중인 경우만 불법적인 것이 된다.

(19 U.S.C. 1337 (a) (2))

나아가 미국 내 산업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1) 공장과 설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있는 경우 (2) 상당한 노동력 또는 자본이 투입된 경우 (3)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또는 라이선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9 U.S.C. 1337 (a) (3))

위의 세 요건 중 처음 두 요건은 산업의 정의에 관한 미국 ITC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세 번째 요건은 미국에서 보호되는 상품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Section 337의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1988년 개정에서 삽입되었다.²⁶⁾

마. 미국 내 산업의 피해 입증 불요

나아가 1988년 개정에서는 미국 내 산업의 정의를 확장함에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과 관련 없는 불법적인 행위에서는 요구하는 미국 내 산업의 피해 입증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²⁷⁾ 즉 위와 같이 침해 지적재산권관련 산업의 존재만 있다면 그 산업의 피해 여부는 묻지 않는 것이다.

이는 Section 337의 구제조치에는 손해배상이 없으므로 굳이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정한 투자를 한 산업의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8년 개정으로 인하여 앞에서 나열된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그 관련된 산업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Section 337의 구제조치요건을 갖춘 것이 되며, 여기에서 미국의 의미는 관세 영역을 의미한다. (19 U.S.C. 1337 (m))

| 발명특허 2009. 7

24) Pun. L. No. 94-553, 16 U.S.C. 602(a). 법무부, 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 420-422면 참조

25) 윤충원, 인영태, 앞의 자료, 64면

26) 신창섭, 미국 관세법 제337조 절차에 관한 연구, (1998.8월) 304면.

27) USITC, Summary of Statutory Provisions Related to Import Relief, USITC Publication 2944, January 1996, p.11.